



◆ 본고는 분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 '양돈법률상담코너'에 게시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 편집자주 ◆



김태욱 변호사

계약 위반사항에 관한 문의

Q 사료 문제와 생산성 등의 문제 때문에 양돈을 접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삼겹살 식당을 맘 먹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회경험이 없고 해서 주위의 삼겹살 집을 인수하였습니다. 인수 과정에 권리금이 6,000만원이고 보증금이 1,000만원으로 돼지판 판매금과 용자를 얻어서 인수 하였습니다. 단, 조건은 10km에 안들어 오기로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이면 1년이 되는데 1km도 안되는 거리에 전에 있던 주인이 식당을 오픈하였습니다. 전 지금 계약서도 잊어 버린 상태인데 권리금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겸업금지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느냐 인데 계약서도 잊어버린 상태여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녹취록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원채용에 관한 문의

Q 아는 사람 소개로 경력사원을 이력서를 받지 않고 채용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응하지 않거나 면접때 구두상으로 말한 경력이 허위임이 밝혀 진다면 채용취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법원은 판시하기를,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면접시에 근로자가 진술한 내용이 그 중요 부분에 있어서 사실과 다를 경우 귀하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사소한 사실이거나, 단순히 이력서 제출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채용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혈청검사 결과 이의제기에 관한 문의

Q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혈청검사결과 67%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분명 모든 돼지를 100% 백신접종을 하였는데 미접종으로 판정되어 벌금이 340만원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이의가 있다 하면 법원에 재판을 하라 그러는데 어떤 형식과 절차를 거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귀하가 문의한 내용에 따르면 귀하는 분명히 모두 접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모두 접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고 그래도 벌금이 부과된다면 그 부과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모두 접종하였다는 사실을 귀하가 얼마나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항생제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문의

Q 저는 충남 당진에서 양돈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 모회사에서 만든 항생제를 모돈사료에 첨가하였는데 그 이후로 모돈들이 사료를 도무지 섭취를 하지 않아 시가로 2000여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선 포유모돈이 사료를 섭취하지 않아 무유증이나 포유자돈의 생육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으며, 심한개체는 사료 기피현상도 있고 폐사에 유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품회사에서는 아무이상 없다고만 할뿐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질 않고 있습니다.

지역 수의사말로는 그 약제에 에리스로 마이신이라는 항생제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기호성을 떨어뜨려 섭취거부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귀하가 피해를 입은 원인이 사료에 첨가된 항생제 때문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료 샘플을 잘 보관하시구요, 다른 농장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강력한 입증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다른 농장들에게도 입증자료를 잘 보관하도록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섭취하지 않는 이유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사받기 바랍니다. **양돈**